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85

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조계원·김문수·주철현

김우영 · 양문석 · 양부남

민병덕 • 이기헌 • 임오경

박지원 · 윤준병 · 이개호

소병훈 · 신정훈 · 민형배

이강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·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"「기부금품법」"이라 함)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 「기부금품법」은 기부금품을 '모집'하는 것과 '접수'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,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·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전문예술법인 ·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

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· 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6항). 법률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6항 중 "모집할"을 "모집·접수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전문예술법인 • 단체의 지	제7조(전문예술법인 • 단체의 지
정·육성) ① ~ ⑤ (생 략)	정·육성) ① ~ ⑤ (현행과 같
	음)
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	6
예술법인 • 단체는 「기부금품	
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	
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	<u>모집</u>
모집할 수 있다.	<u>·접수할</u>
⑦・⑧ (생 략)	⑦・⑧ (현행과 같음)